

「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(제3판)」

부분 수정 사항(11.1.부터 적용)

- 코로나19 비상관리조직을 '대학 일상회복지원단'으로 전환(p2)
 -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부터 학내 코로나19 대응 비상관리조직을 '대학 일상회복지원단'으로 전환하여 운영

< (참고) 대학 일상회복지원단 구성 및 주요 기능 >

- ▶ (구성) 학내 코로나19 대응 총괄(총장 또는 부총장 등), 실무담당자, 학생(반드시 포함) 등
- ▶ (기능) 11월 한 달 간(11.1.~11.30.) 새로운 방역체계 적용 및 방역관리 상황에 대한 대학 자체 방역점검* 추진
 - * (점검 항목) 일상회복 전환 이후의 학내 코로나19 대응체계 운영, 출입관리, 시설 방역 등
- 변경된 방역 수칙과 기초 방역수칙을 학내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을 강화하여 생활 속 방역 관리 철저

-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및 수동감시자 등교·출근 규정(p14)
 -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 등교·출근 가능
 - 수동감시자인 학생의 경우 대면수업 등 필수 교육과정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, 수업 외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

◆ (참고) 수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

- (수동감시 요건) ①확진자 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이며, ②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고, ③PCR 검사 결과 음성이며, ④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 시설의 입소자·이용자·종사자가 아닌 경우, 자가격리를 면제
- (자가 모니터링) 수동감시 기간 중 본인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
- (외출자제)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출퇴근, 등하교 등 꼭 필요한 경우 이외의 외출을 자제하며, 특히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문을 자제
- (수동감시 중 검사) 접촉자 분류 직후와 최종접촉 6~7일차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,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도 수동감시 유지
 - ※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
- (수동감시 종료) 최종접촉 14일차에 수동감시 종료
 - ※ 출처: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 3판('21.9.24.)

- 기숙사 입소생이 PCR 음성확인서 대신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, ① 최초확진 후 89일 이내이며 ② 임상증상이 없고 ③ 확진자 노출력이 없는 경우에만 입소 가능(p16)
- 통학·셔틀버스(p20)
 - 차량 내·외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며, 버스 운전자 및 탑승자 전원 마스크 착용 후 전 좌석 착석 가능
- 열람실 및 그룹토의실(p20)
 - 열람실, 그룹토의실 등은 개방 후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실시(운영제한시간: 자정(24시))
- 학내 행사(p24)
 - 학내에서 진행되는 행사는 집중여부 관계없이 100명 미만 참여 가능
- 학생 자치 활동(p24)
 - 대학 본부와 협의를 거쳐 학내에서 운영되는 학생자치활동은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을 적용*하여 운영하되, 그 외 활동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의 사적모임 허용 기준 적용
 - * (예) 좌석 있는 강의실에서 운영하는 동아리 모임의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적용